

2024년 목포시 『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』

참여자 2차 모집 공고

(재)전남인력개발원은 2024년도 목포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5일

1. 사업 목적 :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만 75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.

2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칭 : 2024년 목포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

나. 사업기간 : 2024년 3월 ~ 12월

다. 주 관 : 전라남도 목포시(청년인구과)

라. 운영기관 : (재)전남인력개발원

3. 모집 안내

○ 모집기간 : 2024. 7. 5.(금) ~ 7. 12.(금)

○ 모집인원 : 5명

○ 활동기간 : 2024년 7월 20일부터 3개월

4. 참여자 요건

○ 만 5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

- 비영리단체, 사회적기업, 공공기관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참여기관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, 만 5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

- 국가기술자격, 국가전문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

* 단,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관련 교육훈련(30시간 이상) 이수 등을 통해 운영기관에

입증가능한 전문성·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

- 해당 활동 분야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연계

○ 참여 제외

- 노동시장 재직자
 - 원칙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직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할 수 있다.
- 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
 -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‘일모아 시스템’ (www.ilmoa.go.kr)으로 신청자의 타 재정지원 활동 사업* 참여 여부 확인
 - 시간제, 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
- 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

*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참여하는 경우 부정환수조치 및 형사 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

○ 우선선정 순위

- 다른 참여자 요건이 유사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
-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한 자가 다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선발시 선발 총점의 5%를 감점하고 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- 자격 및 경력분야와 희망 활동분야 일치 여부
- 참여자 초과시 저 연령순 선발
- 참여 신청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 할 경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차순위 예비 대상자를 결원 발생시 즉시 활동 가능하게 관리

5. 신청(구비)서류

- 「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」 1부.
- 「전문경력 기술서」 1부.
-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

것을 입증할 서류 각 1부.

- 업종,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졸업증명서 사본 등

*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, 보완 및 수정제출 요구

* 참여요건 - 신청(구비)서류 3부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, 결격 처리

※ 신청양식 변경되어 반드시 첨부 서류로 신청

6. 접수 방법

○ 이메일접수 : mi5sae@hanmail.net

○ 우편 접수 : (58663)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83. 3층

○ 문의처 : (재)전남인력개발원 ☎ 061-284-2846

7. 참여자 선정
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 유선 통보

○ 전년도 부정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8. 지원내용

○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

-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에게 1일 9천원(식비6천원+교통비3천원) 지급

-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는 교통비 3천원만 지급

○ 참여 수당

-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한 활동시간 1시간당 2천5백원 지급

- 참여수당은 월단위로 지급, 잔여시간이 30분 이상(30~59분)인 경우 1시간으로
계산하여 지급

※ 지원금 지급

참여기관의 월별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참여자의
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야 하나,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이 계좌개설을
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판결·공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.

9. 지원 기간

○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 이내. 다만, 활동 내용의 특성상
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월 120시간 초과 가능

○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 있는 교육시간, 회의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

○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(15포인트 기준)를 2시간으로 인정,

작가(방송작가 포함)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

A4 1매 (15포인트 기준)를 1시간으로 인정

○ 활동의 종료는 (재)전남인력개발원이 공지하는 날까지로 함.

*** 참여자 지원금 예산 현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**

10. 기타사항

(기초교육) 참여대상으로 최종 승인이후 최대 8시간 이내,

단, 직전년도 참여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간 이내

(사회공헌 활동 실시)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 실시

○ 사회공헌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

- 취미(친목)형

·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

·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 위해 활동하는 경우

- 단순형 : 단순노무 및 노력봉사의 성격(환경미화, 질서관리 등)

- 경력비(非)활용형

- 타부처 중복형

· 타 부처 일자리사업(예:노인사회활동,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사업, 아동안전지킴이사업 등)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내용이 유사중복 되는 경우

부정행위에 따른 제재

○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,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지원중단, 부정수급액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조치